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231
----------	------

제출년월일 : 2012. 2. 22.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조문변경에 따라 해당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011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조문 순서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안 제1조, 제11조)
- 나. 상위법령 법조항 명확히 기술 (안 제16조)
- 다.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조문 정비

개정 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1. 12. 16 ~ 2012. 1. 6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사업이라함은”을 “수도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시장”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따른 경비

제11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년”을 “해당 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7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제16조제2호 중 “익년” 을 “다음 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로 “제1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2조 제4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40조에 따라” 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36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익년” 을 “다음 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수도행정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수도행정과 신효승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업회계담당 윤철
	담당자 성명·전화	장희정 (행정 365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 수도사업이란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 .
제3조(급수구역) 안산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산시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 . -----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그 밖에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범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 .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 법 제11조에 따른 -----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금수는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생략)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생략)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생략)

1. (생략)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법 제13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반회계 부담) ----- 그 밖의 -----
----- 따라 -----
-----.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따른 경비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에
----- 따른 -----
-----.

③-----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

④-----
----- 해당 년-----
-----.

제13조(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에 따른 -----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 3. (생 략)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생 략)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 . ----- . ----- .

1. 해당 ----- . ----- .

2.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 ----- . ----- .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 다음
년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 .

제12조 제4항에 따른 -----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 . ----- . ----- .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공포) ----- . ----- . ----- .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생략)

1. · 2. (생략)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다음 년 -----
-----.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

